

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자격 요건중 본적지 및 거주지 등의 제한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수상자를 분야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파주시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관리·운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문화상 수상인원을 학술·예술·교육·지역개발·체육등 5개부문으로 각각 1명씩 수상하던 것을 이를 통합하여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도록 함. (안 제2조)
-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상후보자가 없을 경우 심사위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-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본적 및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문화상을 수상한자는 제 수상을 할 수 없도록 함. (안 제5조)
- 문화상 심사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되도록 함. (안 제6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파주시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본적지 및 거주지 등의 제한을 폐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범위를 확대함

은 물론 수상인원을 5개 분야별 각각 1명씩 수상하던 것을 통합하여 1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수상자의 권위를 상향시키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